고용노동부 | 보도참고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19.(목) 배포 즉시

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(AML) ‘위법 개조’ A제조업체 적발

고용노동부 익산지청(지청장 고병곤)은 전도 및 추락사고 예방 방호장치인 **과부하방지장치(AML*)**를 사업주(차주)가 임의로 무효화할 수 있도록 위법 개조하여 고소작업대를 **판매**한 **A제조업체**를 **적발**하고, **신속한 안전 확보를 위해 개선조치에 착수**했다고 밝혔다.

* AML(Automatic Moment Limiter): 작업반경, 붐대 각도, 적재 하중 등을 실시간 감지하여 전도 위험 범위에 도달하면 기계작동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핵심 방호장치

수사 결과, **A제조업체**는 **정상적**으로 **안전인증**을 받아 고소작업대를 **제작·판매**한 후, **사후적**으로 차량 제어기판 내에 **과부하방지장치**(AML) **작동**을 사용자(차주)가 **수동**으로 끌 수 있는 **무효화 장치**(2핀 커넥터, 다이얼스위치 등)를 **설치**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.

이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87조 제1항 제2호(안전인증기준 부적합 기계 제조·양도 금지)를 위반한 **위법행위**로, **고용노동부 익산지청**은 **A제조업체 대표 및 법인**을 **사법 조치**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)할 방침이다.

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사용자(차주)가 **임의로 ‘방호장치’를 무효화** 한 후 **허용 붐대 길이·하중을 초과**해서 **고소작업대**를 **사용**할 경우 **전도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**이 있으므로, **개선명령** 등을 통해 고소작업대의 **무효화 장치**를 **완전 수거·파기** 할 예정이다.

❶ **개선명령 및 안전인증표시 사용 금지**: **제작·판매**된 **차량 전반**의 **안전성 개선** 및 안전인증 기준 미달 사항이 **완전히 해소**될 때까지 **인증표시 사용**을 **제한**

❷ **수거 및 파기 명령**: 해당 차량에 설치된 **2핀 커넥터, 다이얼스위치** 등 **무효화 장치 전량 회수 및 폐기**

또한, **전(全) 차주**에게 **안내·경고** 공문을 발송하여, **어떤 상황에서든 방호장치 기능**을 **무효화**하고 **작업**할 경우 **형사처벌 대상***임을 고지했다.

* **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제1항 제2호**: 누구든지 안전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아니됨(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)

정부는 **사용자**(차주)가 **개선명령**(리콜)에 **불응**할 경우 **현장 점검**을 실시하고, **방호장치**의 **작동 상태**를 **기록**하는 '**로그기록(Log)**'을 확인하여 **허용범위**를 **초과**하여 **사용**한 사실이 **확인**될 경우 「**산업안전보건법**」에 따른 **사법조치** 및 **즉시 '사용중지명령' 처분**한다.

앞으로도 정부는 **고소작업대 등 방호장치 무효화 장치 부착 사례**를 **발굴**하고, **지속적으로 점검**하여 **개선**토록 조치할 **예정**이다.

담당 부서	익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감독과	책임자	과 장	조정익 (063-839-0030)
		담당자	감독관	이재훈 (063-839-0036)
	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기준과	책임자	과 장	박윤경 (044-202-8850)
		담당자	사무관	권중화 (044-202-8853)
			주무관	이도헌 (044-202-8856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